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공 고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제8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고할 사항-

1. 화해허가결정(덧붙임)

2021. 3. 3.

재판장 판사 권 순 형

서울고등법원

제 12 - 2 민사부

결정

사 건 2020나203973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항소인

별지1 원고(대표당사자)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대표당사자) 및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구현주

피고, 피항소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허창수, 임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이상윤

주 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731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별지2 '화해사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허가한다.

이 유

1.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대표당사자)들은 2013. 10.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허가 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824호) 2015. 2. 12.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6. 1. 29. 항고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2015라539호) 및 2016. 6. 10. 재항고기각 결정(2016마253)이 각 내려졌다.

나. 제1심법원은 2014. 2. 7.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원고(대표당사자)들을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 구성원들은 신고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대표당사자)들 및 피고는 2020. 12. 11. 별지2 '화해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화해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12. 2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화해허가 신청사실 및 그 내용을 공고하였고, 2020. 12. 24.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경향신문 지면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으며, 2020. 12. 31. 확인된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였다.

2. 화해사항에 대한 판단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재판상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바,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공정성

양당사자는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권리신고를 행한 구성원 전원의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원 상호간 차등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당성

화해금액 120억 원은 원고(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총원 10,251명에 대한 손해액 43,777,824,170원의 약 27.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밖에 제1심판결의 선고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화해금액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적정성

재판상화해로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총원은 주장하는 손해를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고, 피고는 경영상의 불안정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상화해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이승한

판사 윤종구

[별지1]

원고(대표당사자)들 목록

1. 김태응
2. 이정수
3. 김성호
4. 이재인
5. 한귀희
6. 정유정
7. 손원목
8. 정철영
9. 한승희
10. 우현구
11. 신병철
12. 조근철
13. 박희준
14. 성봉경
15. 김원자

[별지2]

화 해 사 항

1.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 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4. 10. 17:3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¹⁾

2. 총원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지급방법(화해의 내용)

가. 화해금

피고가 총원에게 지급할 화해금의 금액은 12,000,000,000원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화해금은 피고가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화해허가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만일 이 기일을 도과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익일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 화해금은 피고가 직접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여 보관시킨다.

다. 원고 주장의 손해액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총원이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유통시장에서 피고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입은 손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및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산정된 총원 10,251인에 대한 손해액 합계금액은 43,777,824,170원이다.

라. 화해금의 산정

피고가 총원에게 지급할 화해금은 위 손해액 합계금액 43,777,824,170원의 약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5호, 제37조에 따라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 구성원들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총원에서 제외됨이 분명하고, 쌍방의 의사 역시 동일함이 기록상 명백하다.

27.4%에 해당하는 12,000,000,000원이다.

3. 분배의 기준 및 방법 등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행한 구성원 전원의 손해액에서 권리신고를 한 각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분배계획안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면책

가. 원고(대표당사자)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나아가 총원에 포함된 각 구성원은 피고 및 관련자들(이하 "피고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피고측을 행정·사법기관 등에 수사·조사 의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총원의 각 구성원은,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집단소송의 계류로 인하여, 해외수주 및 해외자금 조달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영업 비밀 노출의 우려가 있고, 기타 금융업 등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업운영에 애로가 있어 화해를 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분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화해를 하게 되었다.

5. 소송비용

원고(대표당사자)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소송허가신청사건의 소송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순번	구성원 번호	성명(계좌명)	주소
1	39	심순금	
2	43	남광희	
3	47	신현무	
4	61	조재균	
5	77	정만영	
6	84	차옥자	
7	130	나홍식	
8	160	조현옥	
9	168	김영진	
10	183	조병희	
11	265	김광찬	
12	267	윤종근	
13	359	김정길	
14	399	성기열	
15	405	이재홍	
16	426	박영자	
17	464	인병식	
18	522	장근재	
19	659	안병소	
20	708	김송자	
21	723	지기철	
22	727	원양희	
23	755	정민선	

24	769	이현록	
25	789	심인자	
26	836	정유경	
27	1061	정인대	
28	1095	김유상	
29	1114	신충식	
30	1136	김의현	
31	1150	김선석	
32	1235	최성숙	
33	1254	설필순	
34	1290	강유수	
35	1304	신명구	
36	1489	박종언	
37	1540	정영순	
38	1648	김덕진	
39	1681	박경춘	
40	1688	김두용	
41	1881	김동대	
42	1918	지명희	
43	2008	윤순구	
44	2075	최호성	
45	2160	권미숙	
46	2180	오원선	
47	2469	김권호	

48	2470	정우식	
49	2563	도성옥	
50	2574	나연화	
51	2654	안병학	
52	2751	손규락	
53	2848	양미령	
54	2904	정옥영	
55	2933	정현주	
56	3130	김유남	
57	3169	윤영자	
58	3174	안경숙	)
59	3185	이재울	
60	3355	강길완	
61	3420	이종복	
62	3573	안기덕	
63	3575	이영주	
64	3659	오순복	
65	3674	김재영	
66	3742	양진학	
67	3745	김금희	
68	3773	유병인	
69	3793	송미자	
70	4044	김소찬	
71	4098	박영자	
72	4110	이동일	

73	4129	김명옥	
74	4223	박춘홍	
75	4416	정진태	
76	4476	최종원	
77	4613	최종철	
78	4748	박도근	
79	4784	김숙희	
80	4883	박종숙	
81	4944	조영철	
82	5172	김정훈	
83	5550	김기철	
84	5575	윤현자	
85	5636	김영수	
86	5730	이순화	
87	5788	박남호	
88	5858	곽승현	
89	5926	한자연	
90	5929	전소영	
91	6022	김성훈	
92	6194	한상덕	
93	6533	최훈희	
94	6543	김성엽	
95	6561	김미경	
96	6577	홍행미	
97	6652	홍준표	
98	6722	유재우	

99	6885	고석길	
100	6947	김채윤	
101	7166	전남	
102	7194	백정석	
103	7425	홍장무	
104	7458	권순택	
105	7600	배상인	
106	7906	심지영	
107	7929	권은성	
108	7979	김동혁	
109	8059	길일종	
110	8935	유지연	
111	8940	이정민	
112	9281	김지인	
113	9432	임경훈	
114	9523	남선오	
115	9553	한준철	
116	9568	이재남	
117	9628	강윤영	
118	9677	박유진	
119	9717	박근한	
120	9794	DEUTSCHEBANKAG	
121	9795	DEUTSCHEBANKAG	
122	9796	DEUTSCHEBANKAG	
123	9797	MorganStanley&Co .InternationalPLC	

124	9798	MorqanStanley&Co .InternationalPLC	
125	9799	MorqanStanley&Co .InternationalPLC	
126	9800	MorqanStanley&Co .InternationalPLC	
127	9820	MERRILLLYNCHINT ERNATIONAL	
128	9821	MERRILLLYNCHINT ERNATIONAL	
129	9824	SUSQUEHANNAIRE LANDLIMITED	
130	9900	IBK인텍스증권모	
131	9901	맥쿼리증권	
132	9973	대신포르테알파 사모24호	
133	9974	대신포르테알파 사모26호	
134	10094	(주)지승개발	
135	10172	(자)밀성주택	
136	10192	Morqan Stanley & Co. International plc	
137	10335	이호익	

<끝>